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- 24호

「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」제정을 위해 그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예고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할 것을 정함(안 제3조).
- 나.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활성화, 서예교육 관련 연수, 서예교육 경연대회 등을 시행할수 있음을 정함(안 제4조).

다.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, 지방자치 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함(안 제5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교육 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(전화 042-270-5243, FAX 042-270-5249, E-mail : papermoon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서예교육"이란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.
 - 2. "학교"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업)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활성화
 - 2. 서예교육 관련 연수
 - 3. 서예교육 경연대회
 - 4. 그 밖에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예교육과 관련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5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, 지방자치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서예"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,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 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.
- 2. "서예교육"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,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서예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- 1. 초등학교 · 공민학교
-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4. 특수학교
- 5. 각종학교